



IMF체제와 자가배합사료 활성화

자가배합사료 원료 공급 절차와 방법

이 성 재 팀장

축협중앙회 사료사업부

지 난해 발생한 IMF체제는 국내 산업전체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특히 축산업은 생산원가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배합사료 원료의 대부분을 수입원료에 의존하고 있어 고환율 시대인 IMF체제하에서는 사료가격 인상으로 축산농가 등 관련 분야 종사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어려운 상황때문에 정부에서는 축산물 생산비 절감을 위한 대책중 하나로 자가배합사료용 원료공급 제도를 마련했으며 '98. 4월부터 축협중앙회 8개 직영공장에서 업무를 시작, 점차 확대되고 있다.

자가배합사료란 양축농가 등 실수요자가 이미 확보한

국내 부존자원에 직접 구매가 어려운 수입원료를 공급자(배합사료공장)로부터 구입하여 농가에서 직접 자가배합한후 가축에게 급여하는 것으로써 자가배합사료제조를 위한 원료 공급 절차와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니 관심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바란다.

1. 목적

축산농가의 자가배합사료 제조용 사료원료를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경쟁력 제고를 도모한다.

2. 공급신청 절차

가. 공급대상

○ 자가배합사료 실수요자 : 양축농가, 영농조합법인, 협업체, 생산자 단체

○ 판매배합사료 실수요자 : 섬유질사료 제조업체(판매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섬유질사료 제조업체)

나. 공급대상 품목

○ 자가배합사료 실수요자 : 옥수수, 호밀, 보리, 밀 등 사후관리 대상품목(관세법, 사료관리법에 따라 할당 관세, 양허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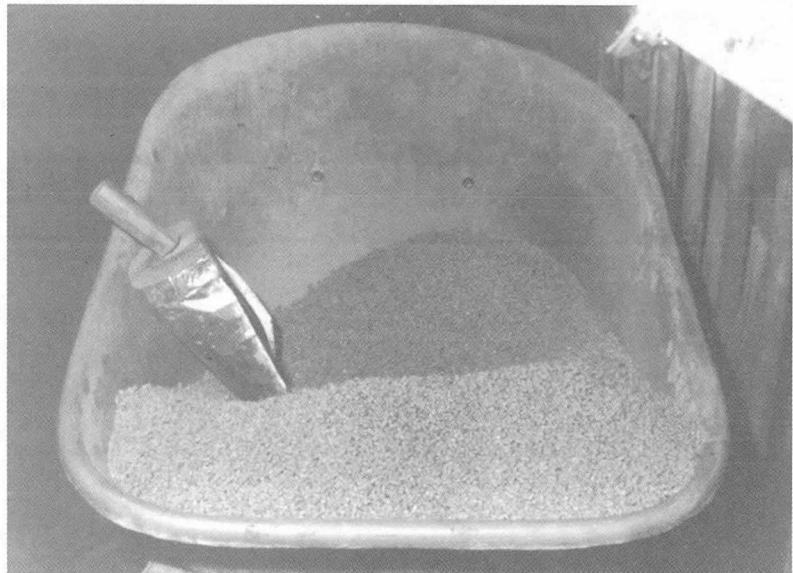
○ 판매배합사료 실수요자 : 옥수수 등 사후관리 대상품목 중 곡물류에 한함.

다. 실수요자 확인

○ 자가배합사료 실수요자 : 사업장 소재지 관내의 지역축협 또는 업종 조합장으로부터 “가축자가사육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공급자(사료공장)에게 제출한다.

○ 판매배합사료 실수요자 : 섬유질사료 제조업체는 제조 허가능력 등이 표시된 “제조업 등록증 사본”과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공급자에게 제출한다.

○ “가축자가사육사실확인원”은 신규, 이전, 사육규모의 증감 등 변경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 자가배합사료란 양축농가등 실수요자가 이미 확보한 국내 부존자원에 직접 구매가 어려운 수입원료를 공급자로부터 구입하여 농가에서 직접 배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 6개월 단위로 발급요청한다.

라. 사료원료 구입카드의 발급 및 관리

○ 공급자는 실수요자가 가축 자가사육 사실확인원을 제출할 때에는 “배합사료용 사료원료 구입카드”를 제작하여 발급한다.

○ 공급자는 실수요자의 사육 규모 및 판매실적을 감안하여 소요량(한도량)을 계산하여 카드에 기재 후 공급한다.

○ 실수요자가 사육규모 및 판매량의 증감 등에 따라 한도량을 변경코자 할때에는 가축 자가사육 사실확인원 또는 판

매실적 증가내역 자료를 공급자에게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 실수요자가 카드를 분실(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카드를 발급한 공급업소에 카드분실(훼손) 진료증 제출하여 카드를 재발급 받는다.

마. 자가배합용 사료원료 한도량 산정

○ 자가배합사료 실수요자

◆ 수입옥수수 등 곡물류의 가축별 1일 공급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소(한육우, 교잡우, 젖소, 수소)는 5kg, 송아지(생후 6개월령까지)는 2kg으로 한다.

② 젖소(암소)는 6kg으로 한다.

③ 돼지는 1kg으로 한다. 다만, 포유돈은 3kg으로 하며, 새끼돼지(생후 3주령까지)는 0.3kg으로 한다.

◇판매배합사료 실수요자 : 공급신청전 3개월 평균 월사용량(제조용)의 30% 증감 범위내

바. 카드의 사용

○실수요자는 배합사료용 사료원료 구입카드를 사료원료 구입시마다 공급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카드에 의한 사료원료의 구입 최소단위는 500kg으로 하며, 이때 공급자는 카드의 한도량을 초과하여 판매할 수 없다.

○카드에는 공급일, 공급수량, 품목 등을 기재하고 실수요자와 공급자가 상호확인 후 날인 또는 서명한다.

3. 공급

가. 물량신청

○실수요자는 공급요청량을 공급자에 공급일 1일전까지 전화로 신청한다.

나. 공급제품의 형태(2가지임)

○옥수수(소맥, 보리, 호밀

등) 곡물류 파쇄물+석회석 혼합형태

○옥수수(소맥, 보리, 호밀 등) 곡물류 알곡+석회석 혼합 형태

나. 공급가격의 통보

○공급자는 공급가격이 결정되면 회원(업종)조합에 통지한다.

다. 판매

○공급자의 판매는 현금판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판매공장에서 실수요자와의 협의하에 채권보전과 관련한 약정을 체결한 경우는 외상공급할 수 있다.

라. 판매단위

○판매단위는 최소 500kg 단위로 판매하며, 톤짜 포장단위나 벌크 차량 단위로 공급한다.

마. 수송

○실수요자가 직접 수송함을 원칙으로 하되 실수요자가 공급자에 수송을 의뢰할 경우 공장에서 운영중인 벌크차량 등을 이용하여 수송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송비는 별도로 지불한다.

4. 공급가격

가. 공급자는 사료공장 문전상차도로 판매가격을 결정하여 판매한다.

다. 공급가격 결정

○CIF구매가격+(CIF구매가격 × 8.5%) +부도~공장 수송임 +공장 취급수수료

◇CIF구매가격 : 공급가격 결정전 2개월간 해당공장의 평균 원료단가

◇공장 취급수수료 : 제조경비, 노무비 등 가공비용을 감안하여 취급공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5. 판매처理

○자가배합사료 실수요자에게는 개별농가별로 영세율판매 처리한다.

○판매배합사료 실수요자는 사업자등록번호에 의한 거래처별로 과세판매 처리한다.

6. 사후 관리

가. 사후관리 기관등

○실수요자가 양축 중단 또는 포기로 인하여 사후관리 대상품목의 공급품 잔량이 남았을 경우에는 공급자와 협의한다.

○ 공급자와 실수요자는 “자가배합사료 원료구입, 공급카드”를 1년간 비치한다.

○ 판매실수요자는 사후관리 대상품목 공급 및 사용내역을 기재, 정리하여야 하며, 매월 공급 및 사용내역을 익월 3일까지 공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나. 위반사항 처리

○ 공급자는 실수요자가 공급한 사후관리 대상품목중 용도

외로 사용함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사후관리기관 및 사후관리자에게 보고(통보)하고, 이에 따라 사후관리기관 및 사후관리자는 이를 의법조치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사후관리 종결

○ 사후관리기관 및 수입추천 대행기관은 사후관리대상자가 제출한 생산실적 및 공급실적

보고서 내용을 검토하여 사료용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사후관리를 종결한다.

상기내용은 농림부 고시와 축협중앙회 자체 운영안을 기본으로 설명하였기에 공장별 여건에 따라 공급가격, 공급조건 등에서 다소 차이가 가능하니 자세한 내용은 인근 사료공장에 문의바랍니다. **養豚**



팩스 있으십니까? 한 장 받아보시지요.

- ❖ 매일의 전국 양돈 시세와 주요 속보뉴스가!
- ❖ 매일 오후 6시 당신의 팩스로... 대한양돈협회가 만듭니다.
- ❖ 매일 시세알아보는 전화요금보다 저렴한 이용료
(1년에 회원 4만원/비회원 9만원...)

문의처 대한양돈협회 지도부
02) 553-3942/6